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11. 24. 윤건영의원 등 15인

나. 회부일자 : 2025. 11. 2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2.5.)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
토론 · 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6.3.24) 상정 · 축조심사 · 의결
(수정가결)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26.3.26.)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윤건영의원)

현행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관리,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됨.

그러나 붕괴위험지역 기준이 불명확하고 상시계측관리 운영과 학교 내 급경사지 관리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 등에 대한 규제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붕괴위험지역 등 관련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교육 행정기관과 학교를 관리기관에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운영실태를 점검·평가하고 운영실태가 부실한 기관에 대하여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제2조 제2호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나아정 전문위원)

1) 용어 정의 명확화 및 관리기관 추가 등 법률 정비 사항 관련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붕괴위험지역, 계측업, 상시계측관리 등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 급경사지 관리기관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추가하며,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있어 인·허가의제 대상을 추가하는 등 법률을 정비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현행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¹⁾.

급경사지란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주로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인공 비탈면이나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이 여기에 해당됨²⁾.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관리,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경사지(急傾斜地)”란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급경사지의 정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급경사지를 소유·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³⁾”이라 한다)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해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해위험도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해당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함.

[관리기관별/시·도별 급경사지 현황]

(단위 : 개소)

시도별	계	관리기관						
		지자체	지방 산림청	한국 농어촌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국가 철도공단	도시 철도공사	국립 공원공단
계	32,878	28,079	103	416	115	3,718	30	417
서울	782	727	3	-	1	8	2	41

1.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비탈면과 주택 등 건축물의 최단(最短) 거리가 3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3미터를 말한다]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인공 비탈면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
3. 그 밖에 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 비탈면, 자연 비탈면 또는 산지
- 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관리기관”이란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 가. 지방자치단체
 - 나. 지방산림청
 -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마. 삭제 <2012. 12. 18.>
 - 바.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 사.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공사
 - 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부 산	1,093	1015	5	-	8	65	-	-
대 구	337	281		6	-	28	16	6
인 천	305	293	5	-	-	6	1	-
광 주	238	196		1	3	26	5	7
대 전	267	204	-	-	1	58	3	1
울 산	757	538	-	-	3	216	-	-
세 종	255	189	-	3	13	50	-	-
경 기	3,692	3282		61	29	297	2	21
강 원	4,077	3324	15	43		604		91
충 북	3,392	3032	5	8	1	324	-	22
충 남	2,053	1816	2	16	5	204	1	9
전 북	2,726	2526	4	20	32	107	-	37
전 남	3,493	2998	56	98	7	293	-	41
경 북	3,954	2755	2	147	3	960	-	87
경 남	5,406	4854	4	13	9	472	-	54
제 주	51	49	2	-	-	-	-	-

(자료 : 행정안전부) * 2025. 2월 기준

[안전등급별/시·도별 급경사지 및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현황]

(단위 : 개소)

시도별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계	32,878(1,462)	995(8)	9,477(85)	19,929(439)	2,439(912)	38(18)
서 울	782(6)	52	409	298(3)	23(3)	-
부 산	1,093(12)	20	476(2)	585(2)	10(7)	2(1)
대 구	337(2)	1	111	209	16(2)	-
인 천	305(2)	57	117	123	8(2)	-
광 주	238(6)	7	77	145	9(6)	-
대 전	267(5)	6	150	104(1)	7(4)	-
울 산	757	60	547	135	14	1
세 종	255(2)	2	82	158(1)	13(1)	-
경 기	3,692(37)	71	1,040	2,293(9)	283(27)	5(1)

강 원	4,077(311)	78	855(13)	2,705(130)	438(168)	1
충 북	3,392(228)	135	932(16)	1,961(36)	358(173)	6(3)
충 남	2,053(69)	98	334(4)	1,555(35)	66(30)	-
전 북	2,726(89)	53(6)	763(6)	1,794(32)	116(45)	-
전 남	3,493(344)	29(2)	710(30)	2,311(70)	431(236)	12(6)
경 북	3,954(188)	228	1,238(2)	2,181(79)	304(104)	3(3)
경 남	5,406(153)	90	1,618(12)	3,356(37)	335(100)	7(4)
제 주	51(8)	8	18	16(4)	8(4)	1

(자료 : 행정안전부) * 2025. 2월 기준

※ () 안의 숫자는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현황

※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 A등급(재해위험 매우 낮음)부터 E등급(재해위험 매우 높음)으로 해당 급경사지를 분류함

아울러 현행법은 관리기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급경사지 지반의 침하·활동·전도 및 붕괴 등으로 위치변화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속적인 계측·자료관리(이하 “상시계측관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계측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⁴⁾하고 있음.

개정안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전반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붕괴위험지역, 계측업, 상시계측관리 등의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하거나 신설하는 한편, 관리기관에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학교를 추가하여 이 법의 관리 대상이 되는 급경사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8조(급경사지의 계측관리 등) ① 관리기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급경사지 지반의 침하·활동·전도(顛倒) 및 붕괴 등으로 위치변화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인 계측(計測)·자료관리(이하 “상시계측관리”라 한다)를 직접하거나 제22조에 따른 계측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직접 상시계측관리를 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측자료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계측자료와 자체의 계측자료를 활용하여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때에는 신속히 해당 지역 주민을 대피시켜야 한다.
- ④ 누구든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계측관리용 기구·장비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국가는 관리기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상시계측관리를 할 경우 계측기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붕괴위험지역 정의 구체화 (안 제2조제4호)	재해위험도평가 결과 반영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으로 구체화
급경사지 관리기관 추가 (안 제2조제5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추가
계측업의 정의 수정 (안 제2조제6호, 제22조)	상시계측 업(業) → 상시계측관리에 필요한 계측기기, 운영시스템 등을 설치하는 업(業)
상시계측관리의 정의 신설 (안 제2조제7호, 제8조)	급경사지 지반의 위치변화와 관련된 자료를 저장·관리 및 분석하여 붕괴 위험 여부를 판단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예·경보를 발령
인·허가의제 대상 추가 (안 제14조)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를 인·허가의제 대상에 포함

다만,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급경사지 관리기관에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학교를 추가하는 것(안 제2조제5호)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 2월 기준 급경사지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학교 내 급경사지는 총 94개 소로 나타남.

[학교 내 급경사지 현황]

합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총 개소수	32,878	782	1,093	337	305	238	267	757	255	
학교 내 급경사지	94	1	4	1	1	1	2	7	-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3,692	4,077	3,392	2,053	2,726	3,493	3,954	5,406	51
		13	19	5	3	-	10	7	20	-

(자료 : 행정안전부) * 2025. 2월 기준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 내의 급경사지의 관리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이나, 학교 등 교육시설에 위치한 급경사지는 학생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더욱 철저한 안전대비와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학교를 관리기관에 추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현행법에서 관리기관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서 새롭게 추가하려는 관리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먼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경우, 동 법률에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⁵⁾에 따른 교육지원청’으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다음으로, 현행법이 관리기관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관리기관으로 추가하는 경우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 보기 어려운 사립학교까지 관리기관에 포함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임⁶⁾.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②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초·중등교육법」 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따라서, 개별 학교별로 급경사지를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는 점, 학교를 관리기관에 포함시키는 경우 급경사지 소재지에 따라 관리기관이 분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관리기관의 범위에 학교를 관리기관에 추가할지 여부를 우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고, 학교를 관리기관에 추가하는 경우에도 국·공립학교에 한정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의 내용에 동의하면서 급경사지 실태조사 과정에서 학교 내 또는 학교 인근에 위치한 급경사지가 다수 발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함.

반면, 관계부처인 교육부는 학교 내 급경사지의 모든 토지가 학교 내에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교육청 또는 학교 소유에 해당하는 토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고, 관리기관으로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학교는 예산 및 인력 운용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다른 관리기관들과 달리 학교 내 급경사지별로 관리기관이 개별적으로 지정됨에 따라 급경사지 효율적 관리도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임.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고등교육법」 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둘째, 계측업의 정의를 수정하고 상시계측관리의 정의를 신설하는 것(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과 관련하여, 현행법령에서는 계측업을 상시계측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반하여, 계측업의 업무 범위는 계측기기 설치 및 자료관리로 규정하고 있어 업에 대한 정의와 업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음⁷⁾.

특히 상시계측관리의 경우, 현행법에서도 원칙적인 상시계측관리 수행 주체는 관리기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이고, 계측업자는 이를 대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⁸⁾, 현행법의 계측업에 관한 정의는 실제 계측업의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보임.

따라서, 상시계측관리에 필요한 계측기기 및 운영시스템⁹⁾ 등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계측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상시계측관리의 정의를 별도로 신설하여 이후 관련 규율의 내용을 명확히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은 상시계측관리의 정의를 신설하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7)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상시계측관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이하 “상시계측관리”라 한다)를 하는 관리기관이나 계측업자(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측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급경사지 계측표준시방서(示方書)에 따라 계측기기를 설치하고 자료관리를 해야 한다.

8)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8조(급경사지의 계측관리 등) ① 관리기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급경사지 지반의 침하·활동·전도(顛倒) 및 붕괴 등으로 위치변화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인 계측(計測)·자료관리(이하 “상시계측관리”라 한다)를 직접하거나 제22조에 따른 계측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9) ※ 관련 내용 30페이지 참고

지역에 예·경보를 발령하는 것'을 그 구성요소로 포함시키고 있는데, 계측업자가 상시계측관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예·경보의 발령은 관리기관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므로 정의 규정에서 해당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행정안전부는 계측업의 정의를 수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상시계측에 필요한 계측기기 및 운영시스템 설치 업무와 상시계측관리 업무(상황관리)를 구분하여 계측업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계측기기에 대한 주기적 성능검사 근거 신설

개정안은 관리기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기기에 대해 주기적인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인기관으로부터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함께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상시계측관리는 관리기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급경사지 지반의 침하·활동·전도(顛倒) 및 붕괴 등으로 위치변화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하는 지속적인 계측(計測) 및 자료관리 활동을 의미함¹⁰⁾.

이러한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기기는 지표변위계, 구조물·지반

10)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8조(급경사지의 계측관리 등) ① 관리기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급경사지 지반의 침하·활동·전도(顛倒) 및 붕괴 등으로 위치변화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인 계측(計測)·자료관리(이하 “상시계측관리”라 한다)를 직접하거나 제22조에 따른 계측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경사계 등 각 기능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행법에는 관리기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이러한 계측기기에 대해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기기]

연번	계측기 명칭	사진	주요 기능
1	지표변위계		지표면의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벌어지거나 수축하는 변화량을 측정 하며, 보통 균열(Crack)이 발생한 부위에 설치하여 붕괴 전조 현상인 균열 확대를 감시
2	구조물·지반 경사계		지표면이나 옹벽, 축대 등 구조물의 기울기 변화를 측정 하며, 미세한 각도 변화를 감지하여 구조물의 전도나 지반의 유동 여부를 파악
3	지중경사계		지중에 가이드 파이프를 매설하여, 지표 아래 어느 깊이에서 어느 정도의 수평 이동(수평 변위)이 발생 하는지 측정하며, 슬라이딩 면(활동면)을 찾는 데 유용함
4	간극수압계		지반 내 흙 입자 사이의 물의 압력(간극수압)을 측정 하며, 수압이 갑자기 상승하면 유효응력이 감소하여 지반 붕괴 위험이 급격히 커짐을 확인함
5	지하수위계		지하수의 높이 변화를 측정 하며, 집중호우 시 지하수위가 상승하면 지반이 약해지므로 실시간 모니터링에 활용
6	함수비센서		지반 내에 포함된 수분의 양(비율)을 측정 하며, 토사가 얼마나 젖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급경사지 붕괴 가능성을 예측
7	하중계		지반 안정을 위해 설치된 앵커(Anchor)나 쏘일네일링 등의 인장력을 측정 하며, 지반이 밀려나오면서 구조물에 가해지는 압력이 설계치를 초과하는지 확인
8	진동센서		지반의 떨림이나 미세한 진동을 감지하며 낙석, 토사 유출, 또는 붕괴 단계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포착
9	강우량계		현장에 내리는 비의 양을 측정 하며, 급경사지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이 강우이므로, 누적 강우량과 시간당 강우량을 분석하여 경보 발령의 근거로 활용

연번	계측기 명칭	사진	주요 기능
10	GNSS		인공위성 신호를 이용해 특정 지점의 3차원 위치(위도, 경도, 고도)를 정밀하게 측정하며, 광범위한 지역의 절대적인 지반 변위량을 파악 하는 데 유용함

(자료 : 행정안전부)

다만, 현행 「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4-31호)」에서는 계측업자로 하여금 급경사지 상시계측 관리에 사용되는 계측기기에 대해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재차 정하면서 그 주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고¹¹⁾, 한국인정기구(KOLAS)¹²⁾에서 인정한 시험기관, 교정기관, 검사기관 또는 현행법에 따른 성능검사 대행기관에서 성능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¹³⁾.

따라서, 개정안은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기기에 대한 주기적인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주체를 관리기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11) 「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4-31호)」 제7조(성능검사 주기) ① 급경사지 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기기는 3년마다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12) ※ 관련 내용 31페이지 참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인정기구의 설치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률 및 국제표준 관련 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기관을 평가하여 그 능력을 공인하는 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인정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공인기관의 인정 또는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
2. 공인기관의 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공인기관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인기관 인정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인정기구는 법률과 국제기구에서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인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④ 그 밖에 인정기구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4-31호)」 제3조(적용범위 및 성능검사기관) ① 법 제26조에 따라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기기는 이 규정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 교정기관, 검사기관 또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성능검사 대행기관에 대행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새롭게 정하면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인기관¹⁴⁾으로부터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행정규칙 상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한 관리기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하는 한편, 해당 업무에 사용되는 계측기기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의 내용에 동의하면서, 계측기기 성능검사는 현행법 제27조에 따라 등록한 성능검사대행자에게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¹⁵⁾, 현재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을 신청한 기관이 없는 상황 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공인기관을 통한 성능검사 의제와 관련된 사항을 상위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4)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합성평가”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적합성평가로 제품, 서비스, 공정 등이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검사 등을 말한다.
2. “적합성평가기관”이란 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적서를 발급하는 교정기관·인증기관·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을 말한다.
3. “교정기관”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교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인증기관”이란 제품, 서비스, 공정 또는 체제 등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시험기관”이란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 등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에 따라 특성을 확인하는 기관을 말한다.
6. “검사기관”이란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적합성평가기관 인정”이란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기구가 적합성평가기관을 평가하여 그 능력을 보증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8. “**공인기관**”이란 제8조에 따라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획득한 적합성평가기관을 말한다.
9. - (이하 생략)

15)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7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① 성능검사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등 사후관리 근거 마련

개정안은 계측전문인력 사전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운영실태를 점검·평가한 결과 운영실태가 부실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의 취소 또는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4항 등).

현행법에 따른 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은 202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까지 총 10회의 교육과정이 운영되어 누적 수료 인원은 362명으로 나타남.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사전 실무교육 실적(2021~2025년)]

구 분	교육 이수		교과목	교육방식 (집합/영상)
	교육기간	인원(명)		
제1기	2021.07.21.~2021.07.30.	63	6개 과목	영상
제2기	2021.08.23.~2021.09.01.	55	6개 과목	영상
제3기	2021.10.20.~2021.10.29.	39	6개 과목	영상
제4기	2022.02.14.~2022.02.23.	22	6개 과목	영상
제5기	2022.03.21.~2022.03.30.	16	6개 과목	영상
제6기	2022.07.18.~2022.07.27.	31	6개 과목	영상
제7기	2022.11.14.~2022.11.23.	26	6개 과목	영상
제8기	2023.08.21.~2023.08.30.	45	6개 과목	영상
제9기	2024.10.14.~2024.10.21.	38	6개 과목	영상 및 집합
제10기	2025.10.20.~2025.10.29.	27	6개 과목	영상 및 집합

(자료 : 행정안전부)

위 교육을 실시·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선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 지정·고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¹⁶⁾, 2021년부터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¹⁷⁾가 교육기관

1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0조(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고시하여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으로 지정·고시되어 있음.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개요]

구 분	내 용
목적	급경사지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 활성화와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지원을 통한 방재역량 제고
조직 구성	총회 - 이사회 - 회장 - 고문·자문단, 8개 위원회, 1사무국 * 임원(20명), 고문·자문단(48명), 위원회(160명), 사무국(9) 등 237명 구성
주요 기능	기술개발, 인력·산업 육성, 정부 및 지자체 업무지원 등
주요 실적	- 실태조사(10,500개소), 안전점검(69개 지자체, 4,610개소) - 재해위험도 평가(53개 지자체, 370개소) - 상시계측관리 검수·시운전 실시(31개 지자체, 46개소) - 계측전문인력 실무 교육(총 8회, 297명 교육 및 수료) - 정밀조사(26개 지자체, 28개소 대책공법 및 소요예산 산출) - 피해 원인조사(피해지 85개소 전문가 지원)
회원 현황	총 332회원(개인 291명, 단체회원 41개) (2023년 말 기준) * 교수(27명), 박사(136명), 석사(86명) 및 자격증(기술사116개, 기사 196개) 등

(자료 : 행정안전부)

그런데, 현행법은 계측전문인력 사전 실무교육 관련 교육기관의 지정·고시에 관한 규정은 마련하고 있으나, 지정·고시된 교육기관의 교육운영실태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아 교육의

17)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설립) ① 급경사지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1. 급경사지 안전관리와 관련된 연구단체
2. 급경사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3. 급경사지 안전관리와 관련된 용역, 물자의 생산, 공사 등을 하는 사람 또는 단체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⑤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경사지 재해 예방과 방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급경사지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수집 및 보급
3. 급경사지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4. 급경사지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과 기술의 개발
5. 민간 주도의 급경사지 재해 관련 국내외 행사의 유치
6. 급경사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및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7. 급경사지 분야에 관한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8. 그 밖에 급경사지 안전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내실화를 위한 감독기관의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현행 행정규칙¹⁸⁾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해당 교육과정의 취소 또는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사후관리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운영에 기여하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같이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를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 해당 지정 취소가 교육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기관에게는 침익적 행정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 현행법에서 청문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¹⁹⁾ 등을 고려하면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해서 이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행정안전부는 계측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기관을 지정·고시하여 실무교육을 대행하게 하고 있으나, 교육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수행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개정안과 같이 상위법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8)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5-2호)」 제20조(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한 점검·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기관의 운영실태·교육실시 내용 및 교육효과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기관의 교육·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효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이나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우수교육기관이나 우수교육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생관리 등 운영실태가 부실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과정의 취소 또는 교육기관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9)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2조(청문) 시·도지사는 제25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계측업의 등록 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4)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위탁 업무에 상시계측관리 추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의 업무 중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상시계측관리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4호 신설).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 등으로부터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급경사지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데²⁰⁾,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해 지반의 침하·활동·전도(顛倒) 및 붕괴 등으로 위치변화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한 활동인 상시계측관리는 위탁 업무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음.

행정안전부는 현행법에 따라 계측업 등록을 한 업체(이하 “계측업자”라 한다) 수는 30개로 계측업자가 상시계측관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6년 1월 기준 상시계측관리를 실제 대행하고 있는 계측업자는 없으며, 계측업자는 주로 전기·통신분야 전문가로서 ‘계측기기 설치 또는 수리’ 업무에 특화되어 있어 ‘상시계측관리’에 필요한 전문성은 부족하다고 설명함.

20)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2.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급경사지 실태조사
3.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
4. 제13조의2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의 작성·보급
5. 제20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따라서, 개정안은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상시계측관리를 추가하여 계측DB 이력관리, 위험성 분석, 계측기 점검, 주민대피에 필요한 기술정보 제공 등 업무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 동 협회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급경사지 안전을 강화하려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다고 보임.

다만, 급경사지의 상시계측관리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어 행정기관의 책임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업무라는 점에서 해당 업무의 위탁보다는 대행 규정을 통해 협회의 전문성을 활용하면서도 원 권한자인 관리기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명의로 책임으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²¹⁾.

또한, 계측업자에게 상시계측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에 비추어 볼 때²²⁾, 개정안과 같이 별도로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경우 상시계측관리 업무의 관리체계가 위탁과 대행으로 이원화되어 관리 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보임.

행정안전부는 관리기관 및 시·군·구의 상시계측관리 업무 담당자의 경우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축적이 어려워 해당 업무의 신뢰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개정안과 같이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상시계측

21) 국회사무처 법제실(2024), 「법제기준과 실제」, p.740 참고

2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8조(급경사지의 계측관리 등) ① 관리기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급경사지 지반의 침하·활동·전도(顛倒) 및 붕괴 등으로 위치변화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인 계측(計測)·자료관리(이하 “상시계측관리”라 한다)를 직접하거나 제22조에 따른 계측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개정안에 따른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개념도]



(자료 : 행정안전부)

5) 응급조치 및 안전조치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

개정안은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또는 안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하고, 위에 해당하는 자들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제재 수준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호 및 제5호 등).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한 경우 관계인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²³⁾, 이에 따라 관계인은 붕괴위험의 해소를

2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관계인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

위하여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²⁴⁾.

또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붕괴위험이 있는 관할 구역의 급경사지에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²⁵⁾.

개정안은 급경사지 재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제재 수준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려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음.

다만, 벌칙으로의 상향 여부와 그 정도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부과하고 있는 응급조치 등 의무 및 안전조치명령 의무 이행의 시급성, 처벌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처벌 기준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는 바에 따라 고시로써 이를 갈음한다.

- 2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붕괴위험지역의 안전 확보) ① 제6조제4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통보받은 다음 각 호의 관계인은 붕괴위험의 해소를 위하여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급경사지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참고로, 최근 3년 간 붕괴위험지역이 지정·고시된 건수는 총 315건으로 나타남.

[최근 3년 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현황]

연도	총계	'23년	'24년	'25년(2월 기준)
개소수	315	166	126	23

(자료 : 행정안전부)

- 25)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재해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붕괴위험이 있는 관할 구역의 급경사지에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급경사지 주변에 안전조치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 다만, 안전조치명령이 발령된 건수는 최근 3년 간 1건(경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참고로, 유사 입법례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현행법의 응급조치 등 의무 또는 안전조치명령 이행 의무에 상응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⁶⁾.

행정안전부는 응급조치 등 의무와 안전조치명령 이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정안과 같이 벌칙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외한다)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 서범수)

개정안에서 급경사지 관리기관에 추가하려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학교를 법 체계를 고려하여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로 구체화하고,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대한 상시 계측관리 업무의 위탁을 대행으로 수정하였으며, 개정안에서 벌칙의 대상으로 정한 행위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조정하여 수정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없 음

9.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 음

10.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5호자목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교육
행정기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 「지
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
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
립학교”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자에게”를 “자 또는 제32조의2에 따른 한국급경사
지안전협회에게”로 한다.

안 제26조제3항 중 “제4항에 따른”을 “제4항에 따라”로 한다.

안 제33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안 제34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안 제37조제2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	제2조(정의) ----- ----- ----- -----.
2. “붕괴위험지역”이란 붕괴·낙석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삭 제>	(개정안과 같음)
1. ~ 4. (생략)	1. (현행과 같음) 2. 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1. ~ 4. (개정안과 같음)
<신 설>	4. “붕괴위험지역”이란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 붕괴·낙석 등으로 인한 재해 위험이 높은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로서 제6조	

	<u>에 따라 지정·고 시된 지역을 말한 다.</u>	
5. “관리기관”이란 급경사지를 소유 하거나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행 정기관 및 공공기 관을 말한다. 가. ~ 아. (생 략)	5. ----- ----- ----- ----- ----- -----.	5. ----- ----- ----- ----- -----.
<u><신 설></u>	가. ~ 아. (현행 과 같음) 자.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교육행정 기관,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 법」에 따른 학교	가. ~ 아. (개정 안과 같음) 자. 특별시·통합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 시·도·특별자 치도의 교육 청, 「지방교 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에 따른 교육 지원청, 「초 · 중 등 교 육 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고등교육 법」 제3조에

<u>자. (생 략)</u> 6. “계측업”이란 이 <u>법의 적용을 받는</u> <u>급경사지 및 기타</u> <u>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시설에 대한</u> <u>상시계측을 업으</u> <u>로 하는 것을 말</u> <u>한다.</u> <u><신 설></u>	<u>차. (현행 자목과</u> <u>같음)</u> 6. “계측업”이란 상 <u>시계측관리에 필</u> <u>요한 계측기기,</u> <u>운영시스템 등을</u> <u>설치하는 업(業)</u> <u>을 말한다.</u> 7. “상시계측관리” <u>란 계측기기 등을</u> <u>통하여 취득한 급</u> <u>경사지 지반의 위</u> <u>치변화와 관련된</u> <u>자료를 저장·관</u> <u>리 및 분석하여</u> <u>붕괴 위험 여부를</u> <u>판단하고, 피해가</u> <u>예상되는 지역에</u> <u>예·경보를 발령</u> <u>하는 것을 말한</u> <u>다.</u>	<u>따른 국·공립</u> <u>학교</u> 차. (개정안과 같 음) 6. (개정안과 같음) 7. (개정안과 같음)
--	--	--

<신 설>

<신 설>

-----계측업을-----

② 관리기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기기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공인기관으로부터
적합성평가를 받은
계측기기로서 행정
안전부장관이 제4
항에 따른 성능검
사 기준에 적합하

(개정안과 같음)

③ -----

----- 제 4

항에 따라-----

	<u>다</u> 고 인정한 경우	-----
	<u>에는 제1항 또는</u>	-----
	<u>제2항에 따른 성능</u>	-----
	<u>검사를 받은 것으</u>	-----
	<u>로 본다.</u>	-----
② 성능검사의 대 상· <u>기준</u> 및 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한다.	④ 성능검사의 대 상· <u>기준·주기</u>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 정안전부령으로 정 한다.	④ ~ ⑥ (개정안과 같음)
③ 행정안전부장관 은 <u>제2항</u> 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행 정 안 전 부 령 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필증을 교부하 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은 <u>제4항</u> 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행 정 안 전 부 령 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필증을 교부하 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은 제27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성 능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	⑥ 행정안전부장관 은 제27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성 능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	

우 성능검사대행자는 <u>제2항</u>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u>상시계측관리업을 한 때</u> 2.3. (생략) <u><신설></u>	우 성능검사대행자는 <u>제4항</u>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4조(벌칙) ----- ----- ----- ----- -----. 1. 제22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u>계측업을 하거나 상시계측관리를 대행한 때</u> 2.3. (현행과 같음) 4. <u>제15조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u>	제34조(벌칙) ----- ----- ----- ----- -----. 1. (개정안과 같음) 2.3. (개정안과 같음) <u><삭제></u>
---	--	---

<u><신 설></u>	<u>를 취하지 아니</u> <u>한 자</u> 5. <u>제17조제1항의</u> <u>안전조치명령을</u> <u>이행하지 아니한</u> <u>자</u>	<u><삭 제></u>
제37조(과태료)	제37조(과태료) <u><신</u> <u>설></u>	제37조(과태료)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u> <u>하나에 해당하는</u> <u>자에게는 500만원</u> <u>이하의 과태료를</u> <u>부과한다.</u> 1. <u>제15조제1항에</u> <u>따라 응급조치</u> <u>등 필요한 조치</u> <u>를 취하지 아니</u> <u>한 자</u> 2. <u>제17조제1항의</u> <u>안전조치명령을</u> <u>이행하지 아니한</u> <u>자</u>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는 200 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① ----- ----- ----- ----- -----.	②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1. ~ 2. (개정안과 같음)
3.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 ----- ----- -----안 니한----- ----- ----- -----	3. (개정안과 같음)
4. 제17조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삭 제>	(개정안과 같음)
5. ~ 8. (생략)	5. ~ 8. (현행과 같음)	5. ~ 8.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자목을 차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급경사지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상시계측을 업으로 하는 것”을 “제7호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에 필요한 계측기기, 운영시스템 등을 설치하는 업(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붕괴위험지역”이란 재해위험도평가 결과 붕괴·낙석 등으로 인한 재해 위험이 높은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자.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

7. “상시계측관리”란 계측기기 등을 통하여 취득한 급경사지 지반의 위치변화와 관련된 자료를 저장·관리 및 분석하여 붕괴 위험 여

부를 판단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예·경보를 발령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의2 전단 및 제6조의2 전단 중 “특별시장·광역시장”을 각각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속적인 계측(計測)·자료관리(이하 “상시계측관리”라 한다)”를 “상시계측관리”로 하고, “자에게”를 “자 또는 제32조의2에 따른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을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본문 및 제5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을 각각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7호 중 “제25조”를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상시계측관리를 업으로”를 “계측업”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상시계측관리를”을 “계측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

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기준 및”을 “기준·주기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후단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관리기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기기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인기관으로부터 적합성평가를 받은 계측기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0조제4항 중 “제2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으로,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를 “교육기관에 대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운영실태를 점검·평가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운영실태가 부실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과정의 취소 또는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으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를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요건, 교육운영실태 점검·평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광역시장”을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호 중 “상시계측관리업을 한”을 “계측업을 하거나 상시계측관리를 대행한”으로 한다.

제35조제2호 중 “제26조제4항”을 “제26조제6항”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제3호 중 “아니하거나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을 “아니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 <u>붕괴위험지역</u> ”이란 붕괴 · 낙석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 ·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삭 제>
3. · 4. (생 략)	2. · 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신 설>	4. “ <u>붕괴위험지역</u> ”이란 재해위험도평가 결과 붕괴 · 낙석 등으로 인한 재해 위험이 높은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 ·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5. “ <u>관리기관</u> ”이란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5. ----- ----- -----.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신 설>	자. <u>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u>

<u>자. (생 략)</u> 6. “계측업”이란 <u>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급경사지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상시계측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u> <u><신 설></u> 제5조의2(급경사지 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u>	<u>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u> <u>차. (현행 자목과 같음)</u> 6. -----<u>제7호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에 필요한 계측기기, 운영시스템 등을 설치하는 업(業)</u>-----. 7. “상시계측관리”란 <u>계측기기 등을 통하여 취득한 급경사지 지반의 위치변화와 관련된 자료를 저장·관리 및 분석하여 붕괴 위험 여부를 판단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예·경보를 발령하는 것을 말한다.</u> 제5조의2(급경사지 실태조사) ① -----<u>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u>-----
--	--

“시·도지사”라 한다)는 급경사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6조의2(붕괴위험지역의 지정 권고)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시사는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이 높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위험 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지역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생략)

제8조(급경사지의 계측관리 등) ① 관리기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급경사지 지반의 침하·활동·전도(顛倒) 및 붕괴

-----.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2(붕괴위험지역의 지정 권고) ①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급경사지의 계측관리 등) ① -----

상시 계측관리
자 또는 제32조의2에
따른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
계획의 수립) ① -----

특
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
장-----

② ~ ④ (생략)

제13조(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① ~ ③ (생략)

④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를 거쳐 이를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관리기관으로
부터 제출받은 정비사업 실시
계획을 직접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
에 대하여 정비사업 실시계획
을 수립한 경우에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70조에 따라 정비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

----- 특별시장·통합특별
시장·광역시장-----

-----.

⑤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정
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
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
0조에 따라 정비사업에 사용되
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제13조제1항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 6. (생략)

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8. (생략)

<신설>

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

1. ~ 6. (현행과 같음)

7. -----제15

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

8. (현행과 같음)

②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

제22조(계측업의 등록) ① 상시계측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

제26조(계측기기의 성능검사) ①
계측업자가 상시계측관리를 함
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이하 “성능
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계측
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2조(계측업의 등록) ① 계측업
은-----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계측기기의 성능검사) ①
-----계측업을-----

② 관리기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기기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인기관으로부터 적합성평가를 받

② 성능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성능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능검사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0조(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 ① ~ ③ (생략)	은 계측기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성능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기준·주기 및-----. ⑤ -----제4항-----. ⑥ -----제4항-----. 제30조(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 5. (생략)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교육기관에 대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운영실태를 점검·평가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운영실태가 부실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과정의 취소 또는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요건, 교육운영실태 점검·평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

-----.

1. ~ 5. (현행과 같음)

제34조(벌칙) -----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u>상시계측관리업을 한 때</u> 2. · 3. (생략)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u>제26조제4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가 성능검사를 부정하게 한 때</u> 3. · 4. (생략) 제37조(과태료) <신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1. ----- ----- -----<u>계측업을 하거나 상시계측관리를 대행한</u>--- 2. · 3. (현행과 같음) 제35조(벌칙) ----- ----- -----. 1. (현행과 같음) 2. <u>제26조제6항</u>----- ----- ----- 3. · 4. (현행과 같음) 제37조(과태료)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1. <u>제15조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u> 2. <u>제17조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 ② -----
---	--

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3.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u>아니하거나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u> 4. 제17조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 8.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 1. ~ 2. (현행과 같음) 3.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u>아니한 자</u> <삭 제> 5. ~ 8.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